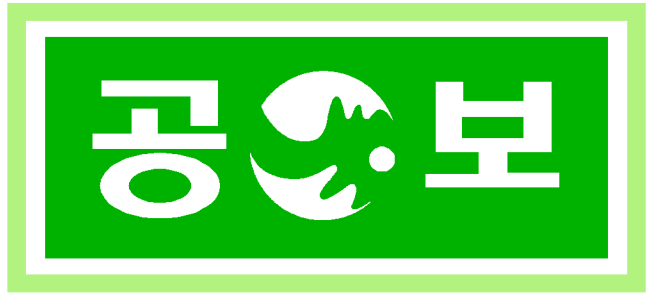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연 람	기 관 의 장



제 988 호 2016. 1. 7. (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4호[도로명주소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5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4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7호[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16호[2016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1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17호[2016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고]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18호[2016년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공고] 15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 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 - 4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매곡로 13-1(신천동)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1. 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221-22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1(신전동)	2016-01-07	매곡동의지명을반영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1-03-22	
2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473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로 89(매곡동)	2016-01-07	기존지연마출애의거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9-04-08	
3	울산광역시 북구 어룡동 66, 63	울산광역시 북구 어룡로 40-6(어룡동)	2016-01-07	어룡마을사업이전행중곳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4	울산광역시 북구 어룡동 76-2	울산광역시 북구 어룡로 42-15(어룡동)	2016-01-07	어룡마을사업이전행중곳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478 2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9길 20-4(진장동)	2016-01-07	옛지명이며원제도사용하는이름으로올산시민이만누구나친숙한이름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12-27	
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478 2-1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9길 20-6(진장동)	2016-01-07	옛지명이며원제도사용하는이름으로올산시민이만누구나친숙한이름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12-27	
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478 2-2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9길 20-8(진장동)	2016-01-07	옛지명이며원제도사용하는이름으로올산시민이만누구나친숙한이름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12-27	
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48 13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3길 13(진장동)	2016-01-07	옛지명이며원제도사용하는이름으로올산시민이만누구나친숙한이름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12-2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 - 5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2길 9-11(신천동)외 3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i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01. 07.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2길 9-11(신전동)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221-22	2016-01-07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6길 34-2(양정동)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98-4	2016-01-07	건축물 멸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새장티3길 9(염포동)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134	2016-01-07	건축물 멸실	
4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558(산하동)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66	2016-01-07	건축물 멸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6- 7호

울산광역시 복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확대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원 추가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 신설

-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부동산평가 관련자 등 제척·기피·회피사항 신설

3. 근거법규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1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민원지적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 052-241-7591, 팩스번호 : 052-241-7569)

6.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② (생 략)</p> <p>③위원중 세무과장, 건축주택과장, 도시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1. 2. (생 략)</p> <p><신 설></p> <p>3. (생 략)</p> <p><신 설></p>	<p>제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p>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p> <p>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p>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16호

2016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단위 : 명)

계	내 국 인	외 국 인	재외국민
145,568	145,347	181	40

- ※ 내 국 인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 외 국 인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
- ※ 재외국민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재외국민

2016. 1. 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17호

2016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역선거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1. 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구청장

(단위 :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최소 서명인 수	비 고
북 구	145,462	21,820		
구 청 장	농소1동	23,747		•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농소2동	24,140		
	농소3동	30,074		
	강동동	7,719		
	효문동	23,298		•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3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송정동	16,299		
	양정동	10,077		
	염포동	10,108		

○ 구의원

(단위 :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최소 서명인수	비 고	
구 의 원	가선거구	47,765	9,5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3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동 별	농소1동	23,747		478
		강동동	7,719		478
		송정동	16,299		478
구 의 원	나선거구	54,214	10,8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2개인 경우 각각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동 별	농소2동	24,140		242
		농소3동	30,074		301
	동 별	다선거구	43,483		8,697
동 별		효문동	23,298	435	
		양정동	10,077	435	
동 별	엽포동	10,108	435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하며,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우리 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산정

※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1. 구청장 : 청구권자 총수의 15/100이상
2. 구의원 :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18호

2016년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연서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단위 : 명)

19세 이상 주민총수				연서 주민수
계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145,502	145,347	115	40	3,638

- ※ 내 국 인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 외 국 인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 ※ 재외국민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재외국민
- ※ 연서주민수 :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40

2016. 1. 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